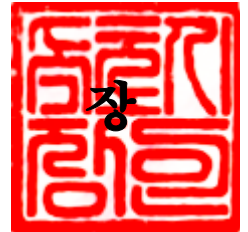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속 초 시 장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가 기존항로에도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국제항로 및 항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항로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안 제5조)

- 1) 국제항로 운항장려금을 신설하고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을 기존 항로까지 확대하여 신규·기존항로 구분 없이 지원 및 컨테이너선 전용 하역장비(gantry crain 등)를 갖춘 하역기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 항목 신설

나. 속초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수 등 변경 (안 제8조)

- 1)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운영을 위해 강원도 항만물류업무 소관 과장을 추가함 (11인에서 12인으로)

다. 조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 (안 제3조)

- 1) 해상운송기업에 대한 손실보전금 및 국제항로 운항장려금의 세부지원 기준 규정
- 2) 항만하역기업에 대한 손실보전금의 세부지원기준 규정
- 3) 화물유치장려금의 세부지원금액을 삭제하고 지원대상 화물 추가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현실에 맞게 일부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속초항물류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26 속초항물류사업소 (우편번호 : 217-809)
- 전 화 : 033 - 639 - 2672 (2694), F A X : 033 - 635 - 8367
- E - mail : tmvhzld1004@korea.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sokcho.gangwon.kr> → 공고/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조제1호 중 ““화주”라 함은 “을 ””화주“란”으로, “수출입”을 “수출입”으로 하고, 같은조제2호 중 ““해상운송기업”이라 함은“을 ””해상운송기업“이란”으로, “국내”를 “국내외”로 하고, 같은조제3호 중 ““항만하역기업”이라 함은“을 ””항만하역기업“이란 “으로, ”화물등을“을 ”화물 등을“으로,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 “을 ”「항만운송사업법」“으로 하고, 같은조제4호 중 ”“국제물류주선기업”이라 함은“을 ”“국제물류주선기업”이란“으로, ”수출·입“을 ”수출입“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하며, 같은조제5호 중 ”“차량”이라 함은“을 ”“차량”이란”으로 하며, 같은조제6호 중 ““상용여객”이라 함은“을 ”“상용여객”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조제2항 중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를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① 시장은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상운송기업의 국제항로 운항장려금과 손실액 일부 및 항만하역기업의 손실액 일부
2. 화주·해상운송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항만하역기업에 대한 화물유치장려금

제6조 중 “지원의”를 “지원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하되”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11인”을 “12인”으로 한다.

제9조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10조단서 중 “지원받는 경우와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을 “지원받는”으로 한다.

제11조제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주”라 함은 속초항을 이용하여 차량을 수출하거나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2. “해상운송기업”이라 함은 속초항을 이용하여 여객, 차량 및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 선사를 말한다. 3. “항만하역기업”이라 함은 속초항에서 화물등을 하역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4. “국제물류주선기업”이라 함은 무역항에서 차량 및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5. “차량”이라 함은 속초항을 이용하여 수출되는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를 말한다. 6. “상용여객”이라 함은 속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와 속초시에 본사나 지사를 둔 업체의 종사자로서 속초항을 이용하여 연간 30회 이상 해외를 왕래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생략) 1. ~ 5. (생략) 6. <u>그 밖의</u> 속초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화주</u>”란 속초항을 이용하여 차량을 수출하거나 컨테이너 화물을 <u>수출입</u> 하는 자를 말한다. 2. “<u>해상운송기업</u>”이란 속초항을 이용하여 여객, 차량 및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u>국내외</u> 선사를 말한다. 3. “<u>항만하역기업</u>”이란 속초항에서 <u>화물등</u>을 하역하기 위해 「<u>항만운송사업법</u>」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4. “<u>국제물류주선기업</u>”이란 무역항에서 차량 및 컨테이너 화물을 <u>수출입</u> 하기위해 「<u>물류정책기본법</u>」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5. “<u>차량</u>”이란 속초항을 이용하여 수출되는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를 말한다. 6. “<u>상용여객</u>”이란 속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와 속초시에 본사나 지사를 둔 업체의 종사자로서 속초항을 이용하여 연간 30회 이상 해외를 왕래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u> 속초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예산 확보) ① 시장은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예산분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지원예산을 확보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생략) 1. 속초항을 이용하여 새로운 항로개척 등 신규 선사유치, 항만인프라 확충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그 선사나 항만관련기업의 손실액 일부 2. 속초항을 이용하여 차량을 수출하거나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 하는 화주·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화물유치장려금 3. ~ 5. (생략) 제6조(지원기준 등)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규모·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되, 전반기는 7월31일까지, 후반기는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호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심사도 같다.	제4조(지원예산 확보) ① 시장은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예산을 확보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현행과 같음) 1. 해상운송기업의 국제항로 운항장려금과 손실액 일부 및 항만하역기업의 손실액 일부 2. 화주·해상운송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항만하역기업에 대한 화물유치장려금 3. ~ 5.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기준 등)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기준·규모·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u>11인</u> 이내로 한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신청자가 <u>허위</u>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정산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여 <u>지원받는 경우와 제 5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u>에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u>기타</u> 시책추진) (생략)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u> <u>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u>12인</u> 이내로 한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신청자가 <u>거짓</u> <u>이나</u>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정산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여 <u>지원받는 경우</u>에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u>그 밖의</u> 시책추진) (현행과 같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2조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에 제4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규화물”이란 속초항에서 처리한 화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가. 해상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船積)한 컨테이너 화물
나. 항만하역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에 적하(積荷)한 첫해의 컨테이너
화물
다.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으로 수출한 첫해의 컨
테이너 화물
2. “순증화물”이란 지난해에 속초항에서 처리한 화물 실적에 당해연도 실적을
대비하여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3. “수출입비용”이란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해상운송기업이 속초항을
이용하여 수출·수입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컨테이너화물”이란 컨테이너에 실려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5. “조례”란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상운송기업
가. 손실보전금은 손실이 발생될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손
실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5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국제항로 운항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화물유치장려금은 신규화물·순증화물 및 차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항만하역기업

가. 손실보전금은 손실이 발생될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손실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1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나. 화물유치 장려금은 신규화물 및 순증화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기업의 화물유치장려금은 신규화물·순증화물 및 차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동일 화물에 대하여 화주와 국제물류주선기업에 중복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상용여객은 매년 러시아 1년 상용비자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속초항 이용 장려를 위해 수출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대상별 세부지원 기준과 금액은 매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단, 손실보전금과 국제항로 운항장려금은 3년간 지원하되, 세부기준 및 조건은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한 협약으로 정하며, 시장은 협약체결 전에 강원도지사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속초항의 화물유치를 위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금 신청 및 사정)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되, 상반기는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금액의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금 신청서류가 불명확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되돌려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화물유치장려금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속초해양사무소, 속초세관 수출입 화물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
- ⑤ 상용여객 비자발급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입국 사실을 법무부 춘천출입국 속초사무소 등에 조회하여 선정한다.
- ⑥ 손실보전금의 산정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상 당기순손실액에 근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강원도 항만물류업무 소관과장

제6조제1호 중 “제3조와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조제2호 중 ”부위치는“을 ”부치는“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정할 때”를 “인정하면”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 중 “회무를 통할하고”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로,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제4호에”를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를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원금 신청서
(신청구분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⑤ 향로명 및 기향지				
⑥ 사업 면허 종류				
⑦ 면 허 번 호			⑧ 허 가 일 자	
⑨ 신 청 금 액		금 원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손실보전금, 국제항로 운항장려금, 화물유치장려금 등 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 1부. 2. 사업면허증(사본) 1부.	수수료:없음
------	---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 ④번은 신청자가 대상 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 ⑧번은 「해운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 면허일자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외국해운사의 경우는 외국인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 허가일자, 허가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⑨번 신청금액을 작성하실 때는 「숙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제3조, 제4조를 확인하시고 지원신청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의 신청구분은 손실보전금, 국제항로 운항장려금, 화물유치장려금 등 지원받으려는 것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여객 지원금 신청서				접 수 번 호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H·P :)			
신청금액	금 원				
비자발급 현황 등	비자 발급일				
	비자의 종류				
	숙초시 거주기간				
숙초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5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상용여객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숙초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선사의 확인을 거친 입출항 확인서 2. 통장 사본 3. 러시아 (상용 복수) 비자 사본 4.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u>」(이하 “<u>조례</u>”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u>관하여</u> <u>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물량”이라 함은 화주, 국제물류주선기업은 속초항을 이용하는 국제정기선에 차량 및 컨테이너 화물(이하 “화물”이라 한다.)을 선적한 날로부터 최초 1년간의 화물량, 해상운송기업은 속초항을 이용하는 국제정기선 취항일로부터 최초 1년간의 선적 화물량, 항만하역기업은 속초시에 영업장을 두고 속초항 국제정기선별화물 하역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초 1년간 선적·하역 처리한 화물량을 말한다. 2. “순증물량”이라 함은 신규물량 대비 또는 전년대비 증가한 화물량을 말한다. 3. “수출입비용”이라 함은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 해상운송기업자가 속초항 이용으로 발생하는 화물 수출입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중 속초항 이용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신 설> 5. <신 설> 제3조(지원금 지급대상 및 범위) ① 조례 제3조와 제5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u>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화물”이란 속초항에서 처리한 화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가. 해상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船積)한 컨테이너 화물 나. 항만하역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에 적하(積荷)한 첫해의 컨테이너화물 다.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으로 수출한 첫해의 컨테이너 화물 2. “순증화물”이란 지난해에 속초항에서 처리한 화물 실적에 당해연도 실적을 대비하여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3. “수출입비용”이란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 해상운송기업이 속초항을 이용하여 수출수입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컨테이너화물”이란 컨테이너에 실려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5. “조례”란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안
1.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기업 가. 속초항 이용 화물유치 장려를 위하여 신규물량은 최초 1년간, 순증물량은 매년 화물유치 장려금을 지원하되, 컨테이너 화물 1티이유(TEU)당 5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동일 화물에 대하여 화주와 국제물류주선기업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속초항 이용화물에 대한 수출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해상운송기업 가. 속초항을 기항하는 정기 신규선사가 손실이 발생될 경우, 최초 3년간 손실액에 대하여 50퍼센트 범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되, 연간 5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나. 속초항에 기항하는 정기선사의 화물유치 장려를 위하여 신규물량은 최초 1년간, 순증물량은 매년 화물유치 장려금을 지원하되, 컨테이너 화물은 1티이유(TEU)당 3만원·차량 화물은 1대당 2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속초항에 기항하는 정기선사의 속초항 이용 화물에 대한 수출입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조례 제5조제5호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원도지사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상운송기업과 체결한 별도 협약서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3. 항만하역기업의 화물유치 장려를 위하여 신규물량은 최초 1년간, 순증물량은 매년 매년 화물유치 장려금을 지원하되, 컨테이너 화물 1티이유(TEU)당 3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상운송기업 가. 손실보전금은 손실이 발생될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손실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5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국제항로 운항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화물유치장려금은 신규화물·순증화물 및 차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항만하역기업 가. 손실보전금은 손실이 발생될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손실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1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나. 화물유치장려금은 신규화물 및 순증화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기업의 화물유치 장려금은 신규화물·순증화물 및 차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동일 화물에 대하여 화주와 국제물류 주선기업에 중복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상용여객은 매년 러시아 1년 상용비자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속초항 이용 장려를 위해 수출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대상별 세부지원 기준과 금액은 매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현행	개정안
4. 상용여객은 매년 러시아 1년 상용비자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상별 세부지원 기준과 금액은 매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③ 시장은 속초항 화물유치 및 속초항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지원금 신청 및 사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신청금액의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금 신청서류가 불명확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화물유치 장려금에 대한 지원금 신청서류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속초해양사무소, 속초세관수출입 화물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 또는 사정하여야 한다.	단, 손실보전금과 국제항로 운항장려금은 3년간 지원하되, 세부기준 및 조건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한 협약으로 정하며, 시장은 협약체결 전에 강원도지사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속초항 화물유치 및 속초항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지원금 신청 및 사정) ① <u>조례 제5조의</u>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되, 상반기는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금액의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금 신청서류가 불명확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되돌려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④ <u>상용여객의 경우, 출입국 사실을 일괄하여 법무부 춘천출입국 속초사무소등에 조회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u> ⑤ <u>신규선사의 손실보전금의 산정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상 당기순 손실액에 근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u>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u>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② <u>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u> 1. ~ 3. (생략) <u><신설></u> 4. ~ 8. (생략) 제6조(심의위원회 기능) (생략) 1. <u>제3조와 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u>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위원회에 <u>부의하는</u>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u>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u>	④ <u>화물유치장려금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속초해양사무소, 속초세관 수출입 화물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u> ⑤ <u>상용여객 비자발급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입국 사실을 법무부 춘천출입국 속초사무소 등에 조회하여 선정한다.</u> ⑥ <u>손실보전금의 산정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상 당기순손실액에 근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u>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u>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② <u>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u>4. 강원도 향만물류업무 소관과장</u> <u>5. ~ 9.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u> 제6조(심의위원회 기능) (현행과 같음) 1. <u>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u>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에 <u>부치는</u>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u>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u>

현행	개정안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u>위원회의 사무를 총괄</u>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u>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u>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위원 임기 및 해촉) ① <u>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u>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으며</u>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